

등록번호	푸른도시과-17614
등록일자	2015. 10. 8.
결재일자	2015. 10. 8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자연생태팀장	푸른도시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
김건홍	김종철	양종수	10/08 代김홍길
협 조	안전치수과장 代허경		

아름다운 변화 열린구정 행복도시 서대문

## 2015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·해제 고시 계획



서대문구  
푸른도시과

# 2015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·해제 고시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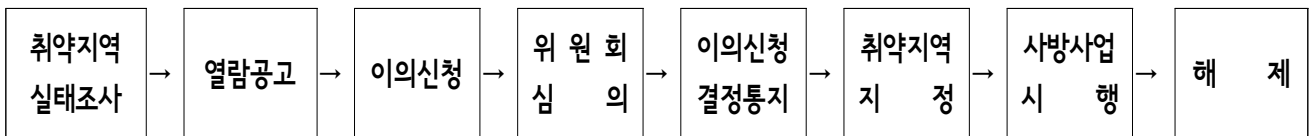
2015년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의 완료 및 2016년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·지정 고시를 하고자 함

## □ 개 요

### ○ 관련근거

-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(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), 제45조의 9(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)
-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(푸른도시과-866, 2105. 1. 13.)
- 2016년 예방사방사업 대상지(후보) 선정통보(산지방재과-9694(2015.09.11.))

### ○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·해제 절차



- 열람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 : 30일
- 이의신청 후 결정통지 기간 : 20일

## □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·해제 대상 및 사유

### ○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

- 대 상 지 : 2016년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대상지 5개소(10개 필지)
- 지정사유 : 토사유실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대상지로서 산지방재과 및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 결과 사방사업이 필요함

### ○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

- 대 상 지 : 2015년 산사태 예방 사방공사 완료지 24개소(78개 필지)
- 해제사유 : 사방사업 완료로 인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목적 달성

## □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

### ○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

구 분	계	수리·수문	토질·지질	산림재해	구청·주민대표
계	10	1	2	2	5
공무원	3				이명균 신현태 양종수
교 수	3	조원철	정상섭 우종태		
관련전문가	2			이명호 이동균	
주민대표	2				최광숙 김경숙

### ○ 심의내용

- 관련법령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
- 심의내용 : “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·재산피해 우려 여부, 구역설정 등 산사태 취약지역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” 기타 내용은 지정 시점을 고려 상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.(붙임 4 참조)

####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·재산피해 우려 여부, 구역설정 등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(상정)
2.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(사방사업)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미상정)
3.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(미상정)
4.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·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(미상정)
5.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(미상정)

※ 해제에 관한 사항은 미상정(붙임 4 참조)

#### 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8(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)

- ⑦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등 「사방사업법」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.

## □ 위원회 참석수당

- 지급근거 : 2015년 예산편성 기준경비
- 소요예산 : 700,000원(100,000원×7인)
- 예산과목 : 푸른도시과, 도시자연생태 기반구축,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, 산림 관리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
## □ 추진계획

- 2015. 10. 12 ~ 11. 11 : 열람 공고 및 토지소유자·이해관계자 이의 신청
  - 2015. 11. 18 :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개최
  - 2015. 11. 20 :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·해제 고시
- ※ 상기 일정은 “이의 신청”이 없을 경우임. “이의 신청” 내용 및 건수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.